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8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263-29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불임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사회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송준원	1980. 07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주된 직업	주요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송준원	현) KH에너지 총괄사장	2005 조지워싱턴대학교 현) KH에너지 총괄사장	해당사항 없음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사회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송준원	1980. 07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3일

주식회사 삼기이브이 대표이사 김치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별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件

현 행	변 경(안)	비 고
제2조 (목적) (추 가) 18. 위 각 항에 관한 수출입업 및 부대사업 일체	제2조 (목적) 18. 자동차 전기배선 제조 판매업 19. 유연성케이블 제조 판매업 20. 위 각 항에 관한 수출입업 및 부대사업 일체	목적사업 추가
제10조 (신주인수권)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 (신주인수권)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 주 인 수 권 부 여 항 목 추가
제10조의1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제10조의1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 장 회 사 특례적용
제11조 (명의개서 등)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명의개서대리인 정한다.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제11조 (명의개서 등) 1. (좌 동)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주식 등의 전자 등록에 따른 주식 사무 처리 방법 변경 내용 반영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제12조 <삭제>	주식 등의 전자 등록에 따른 명의개서 대리인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경우에도 같다.		
제15조2 (교환사채의 발행) <신설>	제15조2 (교환사채의 발행) 1.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요건 추가
제29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한다.	제29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상장회사 특례적용
제45조2 (중간배당) <신설>	제45조2 (중간배당) 1.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로부터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④ 직전결산기의 경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⑤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이익준비금 ⑥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중간배당 도입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